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의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재정상 부담 등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음.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 고려 시 국방부 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두자는 요구가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허가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외에 국가 안보상 필요가 있을 시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 발사허가 권한이 병존함을 명시하고(안 제11조제6항)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 가능 조항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3. 주요내용

가. 국가 안보상의 필요가 있을 시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발사허가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안 제11조제6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허가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 가능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제7의2호, 제8호를 각각 제8호, 제8의2호, 제9호로 한다.

7.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에 관한 사항

제1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을 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발사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본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효율적인 발사허가를 위해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발사 운영자에 대하여 발사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사면허의 기간, 발급절차, 검토사항, 변경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중 “제11조”를 “제11조 및 제11조의2”으로, “발사허가”를 “발사허가 또는 면허”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발사면허의 취소 및 청문)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발사면허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우주발사체 또는 우주발사장 또는 발사안전관리 시스템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4.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중 “제8조 및 제11조”를 “제8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으로 한다.

제16조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제11조의2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받은 자

제27조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발사면허를 받지 않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7. (생략)</p> <p><u>7의2.</u> (생략)</p> <p>8. (생략)</p> <p>③ ~ ⑧ (생략)</p> <p>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 ⑤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에 관한 사항</u></p> <p><u>8. (현행 제7호와 같음)</u></p> <p><u>8의2. (현행 제7의2호와 같음)</u></p> <p><u>9. (현행 제8호와 같음)</u></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u>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을 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발사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u></p> <p><u>제11조의2(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u></p>

<신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5. (생략)

<신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효율적인 발사허가를 위해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발사 운영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사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사면허의 기간, 발급절차, 검토사항,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
----- 제11조 및 제11조의2----- 발사허가 또는 면허-----.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발사면허의 취소 및 청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발사면허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우주발사체 또는 우주발사장 또는 발사안전관리 시스템의 안

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4.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8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우주사고조사단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④·⑤ (생략)

제27조(벌칙) ①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2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면허를 받은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① -----
----- 변
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1
조의2에 따른 발사면허를 받지
않고 -----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4629